시흥 장현지구 B-5블록 『제일풍경채』 에듀 입주자 모집공고

풍경채 아름다운 풍경이야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18.2.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2.9., 타법개정]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3.2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시흥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서는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100%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해당지구는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가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3.23.) 현재 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7.03.2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이하 "시흥시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17.09.23. 이전부터 계속거주 이하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공급(시흥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이하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에서 →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1순위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와 2순위는 현행과 같이 추첨방식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청약 자격 강화로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 ·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자에 한하여 2순위 청약 가능
    - • 변경 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구 '청약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일 경우 입주자저축 미가입자도 2순위 청약 가능 → 변경 후 : 모든 지역에 입주자저축 필요
  - 예비입주자 비율 20%에서 40%(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변경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02.0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h-jeil.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8.02.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가능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됨.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청약 가능함. ■ 본 아파트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주택형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이며, 2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2주택 이상 보유자)가 2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합니다. ■ 공급유형별(특별공급, 일반공급)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아래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 및 제47조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임.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8.04.17.)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70-2번지 일원에 설치되며,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www.jh-jeil.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할 경우에는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내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방문,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본 주택의 해당 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의거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 고령자 및 장애인과 다자녀가구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8.2.9부터 통합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등에 의거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포함되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시행사 및 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담 함.(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해당기간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자들에게 별도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www.jh-jeil.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할 경우에는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내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형사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8.02.0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주택과 – 13923호(2018.03.22.)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장현공공주택지구 B-5블록
-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1층 ~ 지상25층 5개동 총 489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48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8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포함)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민영 주택	2018000449-01	75.1125	75.1125	23.0132	98.1257	45.5890	143.7148	55.1719	148	14	14	14	4	102	6	2020년 8월 예정
	2018000449-02	84.9260	84.9260	25.6185	110.5445	51.5453	162.0898	62.3801	341	34	34	34	10	229	14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대상자 중 일반(기관추천) 대상자는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원)

주택형	구분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입주지정일
									계약시	2018.05.10	2018.09.10	2019.01.10	2019.05.10	2019.09.10	2020.01.10	2020.04.10	
75.1125	75	102동 전체 103동 3,5호	148	1층	6	127,986,000	197,214,000	325,200,000	10,000,000	2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97,560,000
				2층	6	127,986,000	212,014,000	340,000,000	10,000,000	2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102,000,000
				3층	6	127,986,000	223,114,000	351,100,000	10,000,000	25,110,000	35,110,000	35,110,000	35,110,000	35,110,000	35,110,000	35,110,000	105,330,000
				4층	6	127,986,000	232,314,000	360,300,000	10,000,000	26,030,000	36,030,000	36,030,000	36,030,000	36,030,000	36,030,000	36,030,000	108,090,000
				기준층	124	127,986,000	241,614,000	369,600,000	10,000,000	26,960,000	36,960,000	36,960,000	36,960,000	36,960,000	36,960,000	36,960,000	110,880,000
84.9260	84	101동 전체 103동 1,2호 104동 전체 105동 전체	341	1층	12	144,708,000	213,292,000	358,000,000	10,000,000	2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107,400,000
				2층	13	144,708,000	229,692,000	374,400,000	10,000,000	27,440,000	37,440,000	37,440,000	37,440,000	37,440,000	37,440,000	37,440,000	112,320,000
				3층	14	144,708,000	241,892,000	386,600,000	10,000,000	28,660,000	38,660,000	38,660,000	38,660,000	38,660,000	38,660,000	38,660,000	115,980,000
				4층	14	144,708,000	251,992,000	396,700,000	10,000,000	29,670,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119,010,000
				기준층	288	144,708,000	262,192,000	406,900,000	10,000,000	3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122,070,000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75.1125	84.9260
약식표기 주택형	75	84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임.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 ·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